사업원가-1 원가관련(항공운송비 및 예가율)

【 건의요지 】

- **코로나로 발생한 항공운송비**는 **방산원가**로 미인정되고 있는데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**인정 검토**를 요청함. 예가율도 코로나로 부담이 상당한 수준

○ 항공운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**해상운송비 범위내에서 발생한 비용을 인정**해주고 있으므로, **항공운송의 당위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**해 보겠습니다.

○ 현재, **예가율**은 업체 부담을 주기위해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**국계령 제9조 ③항에 따라 해당 계약건별로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**하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문의처 : 방위사업청 기반전력해상공중원가팀 055-281-1053 >